

〈칼럼〉

소득표준율 12.5%

매년 4월이 되면 모든 사업자들은 지난 한해동안 그들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게 된다. 금년도 4월에도 경영주들은 77년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실시하였다.

납세의무는 병역의무와 함께 국민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중의 하나이다. 비단 국가뿐 아니라 모든 군소사회단체는 어떤 형태로서이든 경비 즉 세금을 징수한다. 동창회와 같은 친목회 따위의 단체에는 회비라는 명목의 세금이 있고, 교회에서는 십일조헌금, 법당에서는 시주라는 형태로서의 세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 사람의 인체구성에서 피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금은 소속단체의 생명을 유지키시고 성장케 하여 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가 마르면 사람이 죽듯이 세금이 없으면 그 단체의 생명은 끊어지게 된다.

축산진흥을 위한 국가의 배려에 의해서 축산업의 사업소득은 완전 면세되어 오다가 혜택기간의 만료로 76년도분에는 사업개시후 최초 소득발생년도부터 4년간은 완전면세, 그 후 2년간은 50% 납부, 그

뒤로부터는 100% 납부등의 3가지 형태로 나뉘지게 되었다.

세금의 무풍지대속에서 자라오던 축산업계는 사업을 하는 당사자나 혹은 세무당국의 담당직원 모두가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었고, 사실상 닭이나 키우고 배지를 사육하는 농부에게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관습상 어쩐지 어딘가 격이 맞지 않은 것 같기도 생각되었을 수가 있었다. 자동차업계와 같은 기계공업이나 3차산업에 비하여 사업활동이 극히 적은 축산업계는 세수실적면에서 고려할 때 “별 볼일 없는 업계”로 세무당국에게는 인식되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76년도의 사업부터는 제도가 바뀌었고 따라서 적든 크든 세금에 대한 파도가 서서히 일기 시작하였다.

최초 사업소득이 발생한 해와 다음부터 3년간—이라고 세법상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기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재

의 양계사업자들은 통상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사업개시년도부터 4년간은 면세이고 다음 2년간은 5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사업개시년도에 반드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



신 정 일

(유일농원 영업부장)

2. 년중 총사료구입량 : 10,000수 × 55 kg = 550톤 = 약 550톤

3. 년중 총사료구입금액 : 500톤 × 95원 /kg = 4,750만원 = 약 5,000만원

4. 총외형 × 0.65% = 5,000만원

총외형 = 7,700만원 = 약 8,000만원

1만수 규모의 육계업자는 방위세를 합하여 약 1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1만수의 산란업자는 350만원, 매주 2,000수 입추규모의 육계업자는 무려 500만원의 세금을 매년 4월말까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하는 것이다. 남의 땅을 빌려서(도지 내어서) 비닐계사를 짓고 코홀리개 자녀 두셋을 학교에 보내면서 부부가 함께 땀 흘리며 힘껏 일해야 하는 매주 1,000수 입추규모의 육계업자가 매년 1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12.5%의 소득표준율은 어딘가 좀 걸맞지 않은 듯한 느낌을 피부로 느낄수가 있을 것이다 실제 위와 같은 규모의 업자에게 이상과 같은 세금을 내시오라고 한다면 입을 딱 벌리고 가만히 서 있을 것이다.

× × × ×

세금납부에 의한 국가에의 기여도를 생각할 때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가 비례적으로 공헌을 하게되는 것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을 조

금이라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어야 하는 곳에 이윤배반적인 아픔이 있고 이의 가장 바람직한 조화를 위해서 사업자나 당국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자는 어쨌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노력은 마치 생산원가를 낮추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이윤추구행동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이 합법적일 때는 절세가 되지만, 그 방법이 비합법적일 때는 탈세가 된다. 당국은 합법적인 실세는 권장하지만 비합법적인 탈세는 결코 용납치 아니한다.

세금의 위협이 없던 곳에 살던 축산사업자가 세금의 과도속에 휩쓸리면서부터 他 산업계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적게 내기위하여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다 외형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등이 고려되고 까다로운 관할 세무서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장 이전을 시도하기도 하며 세금에 미리 두려움을 느끼고 사업의 확장을 신중히 재 검토하기도 한다.

의정부지역의 관할세무서는 축산사업자에게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양주군 주변에는 옛날부터 축산업 특히 양계업이 번창하며 사업자등록



재수수 10,000수규모이며, 산란계는 10,000수 정도의 규모를 그 대표적인 모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산란계이든 육계업자이든 위와같은 1만수 규모의 양계인이 정식 장부기장에 의해 납세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99% 이상이 기장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저 세무행정이란 급격히 변동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적용이 불가피한 부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원칙하에서 상황과 장소에 따라 가변적인 수 있으며, 축산업에 대한 실제 과세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히 관할세무서나 담당자의 소양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수가 있다.

양계산업이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속에서 가장 엄격(?)하게 과세되는 경우는 현실적인 외형의 기준을 사료구입자료에 의하게 되고, 사료구입금액이 양계산물 생산원가의 65% 정도라고 간주하여 외형의 총금액을 결정하는 때이다. 국세청 전산실에서 처리되는 사료구입 수량은 세무담당자가 과세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육계업이든 산란계업이든 사료금액이 생산원가의 65% 정도라는 주장을 명확히 반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의사전달능력이

결여되는 있는 상황에 양계업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1만수 규모의 육계업자와 산란계업자가 이상과 같은 가장 엄격한 근거하에 소 득표준율에 의한 과세를 납부할 경우의 예를 생각해 보자.

▲ 1만수(매주 입추 1,000수)규모 육계업자의 외형

1. 수당사료섭취량 : 사료효율 2.7×수당평균체중 2kg = 5.4 = 약 5.5kg/수 kg

2. 년중 총사료 구입량(년중 계사소독 및 정비를 위해 1개월 휴식 時) : 11개월×4주 = 44주×매주 입추수수 1,000수 = 44,000수×수당 사료섭취량 5.5kg = 242톤

3. 년중 총사료 구입금액 : 약 240톤×130원/kg = 3,120만원

4. 총외형×0.65% = 3,120만원

총외형 = 4,800만원 = 약 5,000만원 ,

▲ 1만수 규모 산란업자의 외형(2개월마다 2,000수씩 년중 6회 입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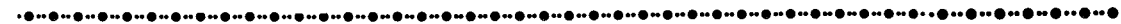
※ 상계계군 분류

어린병아리 : 1개군 2,000수

중 · 대 추 : 1계군 2,000수

산란계 : 4군 8,000수 4계군

1. 수당사료 섭취량 : 초생추 1.3kg + 중추 3.5kg + 대추 6.2% + 산란계 44kg = 55kg/수 kg





으로 인식 또는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77년도에 양제를 시작한 A라는 사업자는 83년도분부터 100%의 사업소득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세금산출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장부 기장에 의함이다. 세금이론에 대한 지식이 빈약한 필자이지만 납세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장부기장에 의한 자진납부일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장이라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소위 인정과세 즉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를 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업계의 능력은기장 他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거의 99%가 인정과세를 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77년도분 사업소득에 대한 양제사업의 소득표준율 12.5%는 77년도분까지 적용되어오던 12%에서 0.5%가 인상된 것이다. 77년도 한햇동안 양제업체의 여러단체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세금납부에 따라 기장과 납세등에 대한 강좌나 세미나등을 매우 많이 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12%라는 양제사업소득표준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분분하였고, 이의 시정을 위하여 충분한 근거자료를 갖추고 세무당국에게 업계의 공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높게 책정 발표된 것이다.

왜 양제사업 소득표준율이 0.5% 인상 조정되었을까? 과연 12.5%의 소득표준율이 양제업체의 현실성과 부합이 되고 있는가?

물론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으리라.

78년 4월 5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국세청의 소득표준율 발표기사에 의하여 전체 사업종목의 소득표준율이 평균 2.11%가 인하여 모두 880개업종의 평균 소득표준율이 8.97%이며, 고급양복점, 보석, 아파트임대업종등을 포함한 134개 업종이 인상되었고, 생활필수품이나 저마진, 영세업종, 또는 불경기업종등에 해당되는 213개업종은 소득표준율을 인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쓰러져가는 간이비닐계사의 한 모퉁이에 새간살이 몇 점을 놓고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 겨우 운영해 가는 농부의 사업인 양제사업 소득표준율이 134개의 인상업종속에 포함되었으며 전체 평균표준율보다 무려 3.53%가 높다는 사실을 과연 양제인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 × × ×

현재 우리나라 양제업체에서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는 규모의 전업 양제인의 경우 육용계는 매우 입추규모 1,000수 즉상

외 형	5,000만원 (1만수 규모육계업자)	8,000만원 (1만수 규모산란업자)	10,000만원 (2만수의 규모육계업자)
소득표준율	12.5%	12.5%	12.5%
소득금액	625만원	1,000만원	1,250만원
소득공제(kg)	78만원	78만원	78만원
과세표준액	547만원	922만원	1,172만원
세 율	40% - 865,200원	44% - 1,225,500원	50% - 1,705,200원
산출세액	1,322,800원	2,923,500원	4,154,800원
방위세율	10%	20%	20%
방위세액	132,280원	584,700원	830,960원
자진납부 세액합계	1,455,080원	3,508,200원	4,985,760원

수도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의 축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그에 따라 까다로운 곳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축산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他 산업의 큰 회사들이 많은 세무서지역은 별 불일 없는 적은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크지 않아 용이하다

× × × ×

이상과 같이 소득표준율 12.5%와 관련된 현황등을 살펴보았다

소득표준율 12.5%가 과연 양계업의 현실에 적절한 것인가? 적절하지 않다면 업계의 뜻을 모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당국에 의사전달을 해야만이 내년도 78년도분 소득표준율 결정에 바람직한 결

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1차산업이 2차나 3차산업에 비하여 실질소득율이 낮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구태어 他 산업의 소득표준율과 비교할 필요없이 생명을 다루는 축산업의 특수성과 현실의 실제적인 요소들을 연구 검토하여 당국에 공정한 뜻을 전달하여 반영되게 하는 것도 양계업계의 하나의 능력이요 힘이다

세금이 무서워 사업의 확장이 위축된다면 결코 좋은 일이 못된다. 식량은 안보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뜻일진대는 적절한 조세하에서 축산물의 증산과 축산업의 발전은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다